

응 시 생 유 의 사 항

1. 검사 일시 : 2020. 8. 16(일) 09:00 ~ 12:00

2. 검사 장소

지 역	수험번호	검 사 장 소	검 사 장 주 소
서 울 (강남)	6090001~6090440	신천중학교	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1
	6090441~6090871	서초고등학교	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29
서 울 (강북)	6190001~6190349	덕수고등학교	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
부 산	6290001~6290243	부산대학교 인문관	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
광 주	6590001~6590169	전남대학교 진리관	광주시 북구 용봉로 77

※ 검사 당일 검사장에 부착된 “**검사실 배치표**”를 확인하여 본인의 검사실에 입실, 해당좌석에 착석(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수험번호별 검사실은 미리 통지하지 않음).

– 접수번호와 수험번호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3. 검사 시간표

교 시	영 역	입 실	문답지배부	검사 시간	비 고
제1교시	자연과학 I	08:30	08:55	09:00-10:15 (75분)	의학/치의학 (공통)
제2교시	자연과학 II	10:35	10:40	10:45-12:00 (75분)	

* 검사 개시 및 종료는 타종에 의함.

4.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사항

-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이하 ‘코로나-19’) 대응을 위해 수험생 안전 수칙을 공지 하오니, 응시자와 검사장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, 발열검사와 손소독/손세정제 사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검사 전/후, 필요시 검사중에도 환기를 실시할 수 있으니,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- 코로나-19 확진자는 검사에 응시할 수 없음(증빙 시 응시료 환불).

[코로나-19 자가격리자 관련 안내 사항]

- 해외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기간을 확인하여 검사에 응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, 자가격리기간이 검사일에 포함될 경우 입국이 늦어진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응시가능 여부를 통지합니다.
- 자가격리 중인 응시생은 배정된 검사장에서 검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응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증빙 시 응시료 환불, 응시를 원할 경우 협의회에 사전 신청을 하고 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응시함.
- 신청 방법(자료 첨부)
 - ① 대상자: 코로나-19 자가격리자 중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자. 단,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자는 증빙서류 제출 후 협의회 심의 결과를 득한자.
 - ② 신청 접수 기간: 2020년 8월 3일(월) 9시 ~ 8월 7일(금) 18시까지.
 - ③ 제출 서류: 자가격리자 응시 신청서, 자가격리자 통지서(관할 보건소 발행), 코로나-19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, 해외입국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.
 - ④ 제출방법: E-mail 제출, www.mdeet.org@gmail.com
 - ⑤ 문의: 02-585-8523~4
- 추가 사항
관할 보건서 등에서 ①외출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(관할 보건소 측 심의결과), ②외출 허가를 득하더라도 정해진 외출시간(이동+시험) 또는 장소·거리(별도 검사장소가 불허지역) 등 허가 받은 범위를 벗어난 자가격리자(사전신청자 포함)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.

※ 첨부: 「코로나-19」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전 수칙 안내문, 코로나-19 자가격리자 응시 신청서.

5. 검사실 입실 시간 엄수

- 응시생은 검사 당일 08:30까지 해당검사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대기하여야 함.
- 검사 시작 후에는 검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람.
- 코로나-19 방역을 위해 발열검사(1차/2차)를 진행하기에,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입실하여야 함.

6. 신분증 소지

- 출력한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거소번호증, 재외국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여권 등)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확인 시 제시하여야 함.
- ※ 신분증 미 소지자는 퇴실 조치함(신분증보완서약서 작성자 제외).

7. 응시생 유의 사항 숙독

- 답안 작성은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“응시생 유의 사항”을 숙독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함(퇴실 시 문제지 지참 가능).

8. 2017학년도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부터 변경된 사항 안내

- 문제지를 회수하지 않음(문제지 지참하여 퇴실 가능).
- 개인필기구 지참가능. 단, 검사 시 책상에는 컴퓨터용수성사인펜,샤프펜슬,샤프심, 지우개,수정테이프만 소지 가능(그 외 필기구 휴대 불가).
- 협의회에서 지급하던 샤프펜슬,지우개는 지급하지 않음.
- 기존처럼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은 개별 지급되며, 수정테이프는 검사실별로 비치함.

9.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

<반입 금지물품>

휴대용 전화기, 스마트워치, 전자시계(결제·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), 무선호출기, 무전기, 블루투스 이어폰, 디지털 카메라, MP3, 전자사전, 카메라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워크맨, 노트북 컴퓨터, 태블릿PC, 전자 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, 각종 정보화기기, 정보저장장치,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, 모든 전자기기.

※검사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검사실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

지시에 따라 제출(미제출 시 부정행위 간주, 검사실 밖으로 반출)해야 하며 검사종료 후 되돌려 받음.

<휴대 가능물품>

신분증, 수험표, 컴퓨터용수성사인펜, 아날로그 시계(결제·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 시계 사용 불가: 스톱워치, 수험용 시계 포함), 개인필기구 등.

※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감독관이 당해 물품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휴대 가능 여부 결정(예 : 돋보기).

10. 검사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

◦ 검사 감독관의 검사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검사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.

※ 결제·계산·통신기능 등이 있는 시계(스마트시계 등) 및 소리로 인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사용이 불가함.

11. 답안은 컴퓨터용수성사인펜으로만 작성

-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.
- 답안지 성명란에는 '정자'로 또박또박 성명을 기입하여야 함.

12. 수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

-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제공한 수정 테이프 또는 응시생이 지참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답을 기표하여야 함.
-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.
- 응시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음.

13. 부정행위 엄금

-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나 검사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당해 검사를 무효로 함.

14. 부정행위의 정의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

- 당해 검사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

- 검사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.
 -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.
 - 검사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반출하지 않은 행위.
 - 검사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,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.
 -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.
- 당해 검사 무효 및 이듬해에의 응시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
 -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.
 -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.
 -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.
 -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.
 -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.
- 민·형사상 조치 및 당해검사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검사의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
 - 사전에 조직적·계획적으로 모의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.
 -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(MDEET) 성적표를 의학/치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/치과대학, 기타 필요로 하는 외부 기관에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.
 - 대리 검사를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한 행위.
 -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.

15. 검사 중 퇴실 불허

- 응시생은 검사 도중에 퇴실할 수 없음.

16. 기타 유의 사항

- 검사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검사장내에서는 일체 “금연”임.
- 검사 중 타 응시생에게 방해로 주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.
- 검사장소 주차는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람.
- 검사장 관리를 위해 개인 쓰레기는 되가져가 주십시오.

※ 응시생이 꼭 지켜야할 사항
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거소번호증, 재외국민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여권만 인정하므로 이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못 한 경우에는 미리 **재발급**을 받아 검사 당일 지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-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/거소증/재외국민주민등록증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본인확인 후 사본은 제출해야 함.

「코로나-19」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전 수칙 안내문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의·치의학교육입문검사(MDEET) 검사 당일 외부인의 검사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.

검사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,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검사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.

1. (출입금지)

- 확진자, 자가격리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 검사장 출입 금지
- 응시자 외 가족, 친지 등 외부인 출입 금지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검사장에서 응시 불가

2. (입실시간 관리) 발열 검사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 요망

3. (거리유지) 발열 체크 대기 시 수험자간 일정 거리 유지, 입실 이후도 동일

4. (발열 검사) 발열 검사는 열화상카메라, 비접촉체온계 등 실시

5. (손소독 실시) 발열 검사(1차-출입구) 후 손소독제 반드시 사용, 검사실 입실 전 2차 손소독 실시

6. (응시자)

- (마스크 착용) 올바른 마스크 착용, 코와 입을 가림, 검사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, 검사 실시 후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리고 본인 확인 협조, 검사 중 마스크 미착용[코와 입을 가리지 않는 행위(지속/반복) 포함]시 퇴실 조치할 수 있음
- 수험자간 불필요한 대화 금지
- 검사장 내 개인 이동 동선 최소화, 흡연 및 침뱉기 금지
- 문제지/답안지 이외 검사장 및 검사실 내 물건 접촉 금지(최소화)
- 손소독제 미사용 또는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
-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개인이 사용한 물품(휴지, 빈음료통, 사용한 마스크 등)은 검사장에 버리지 말고, 되

가져가기

- 검사 종료 후 수험번호순으로 퇴실(안전거리 유지를 위함), 퇴실 시 손소독제 사용 후 귀가
- 검사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) 또는 보건소로 문의.

7. (유증상자)

- 발열검사(열화상, 비접촉, 고막)에서 37.5°C이상일 경우 예비검사실에서 검사 실시(인솔요원이 안내, 관할 보건소에 신고 검사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조치)
- 검사 도중이라도 발열 및 특이한 증상이 있는 경우 감독관 또는 관리요원에게 알리기

8. (검사실 환기) 검사실 안전 관리를 위해 검사전, 검사중 및 쉬는 시간에 창문 등을 개방하여 환기를 실시할 수 있음. 환기 시 더위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-19 예방관리를 위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
 손바닥, 손뼉 및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!	 기침할 땐 뽀뽀로 가라기!	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(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)	 선별진료소* (의무기관)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* 선별진료소 명칭: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별번호: 120, 1339 문의	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, 지역번호+120 상담
--	---	---	--	--

코로나-19(COVID-19) 자가격리자 응시 신청서

◎ 성명 :

◎ 생년월일 :

◎ 수험번호 :

◎ 연락처 :

◎ 비상연락처 :

◎ 자가격리장소(상세 주소) :

상기 본인은 코로나-19 자가격리자로서, (사)의 • 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회가 정하는 별도 장소에서 시험 응시함을 신청합니다.

첨부: 1. 자가격리자 통지서(관할 보건소 발행) 1부
2. 코로나-19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 1부
3. 해외입국자의 경우 검사일이 자가격리기간(14일)에 포함된 사유서 및 증빙서류 1부 (협회 심의 후 시험가능여부 통지) 끝.

2020년 8월 일

신청인:

(서명)

(사)의 • 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회 이사장 귀하

「코로나-19」예방 수칙 안내문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

국민 예방수칙



흐르는 물에 비누로
꼼꼼하게 손씻기



기침이나 재채기할 때
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


씻지 않은 손으로
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
특히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



발열, 호흡기 증상자와의
접촉 피하기



의료기관 방문 시
마스크 착용하기



사람 많은 곳
방문 자제하기

유증상자* 예방수칙

*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목아픔 등) 이 나타난 사람



통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
외출 자제하기



3~4일 경과를 관찰하며
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



38℃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

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,
관할보건소 문의 및
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



의료기관 방문 시
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



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
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



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

외출,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
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
지시 철저히 따르기

「코로나-19」 감염병 예방 수칙



**비누로 꼼꼼하게
30초 이상**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**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
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**

**기침할 때 옷소매로
입과 코를 가리고!**



[올바른 기침예절]



발행일 2019.11.5.